

#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433
------	-----

2023. 3. 10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1월 25일, 김기덕 의원(찬성자 21명)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】

-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3.3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기덕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위원회 운영 횟수를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규정함(안 제10조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(2021.8.10. 개정)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서울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어야 하며, 서적 소매업 사업자로 등록할 것과,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도록 하는 등의 ‘지역서점 요건’을 반영하고자 발의됨.

### 나. 서울시 지역서점 현황

- 서울시 내 지역서점 수는 2003년 통계 수집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, 서울시의회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마련한 이후 서울시 정책을 견인하면서 2021년에는 이례적인 증가세로 전환되었음.

#### 《 서울시 서점 수 현황(2003~2021) 》

	2003	2005	2007	2009	2011	2013	2015	2017	2019	2021
서점 수(개소)	547	533	505	428	423	412	403	343	324	492
증감률(%)	-	△2.6	△5.3	△15.2	△1.2	△2.6	△2.2	△14.9	△5.5	51.9

※ (사)한국서점조합연합회 「2022년 한국서점편람」

※ 전국 서점 수: '20년('19년 통계) 2,320개소에서 '22년('21년 통계) 2,528개소로 소폭(0.9%) 증가

## 다. 조문별 주요 내용

### (1) ‘지역서점’의 정의(안 제2조)

- 개정안은 ‘지역서점’의 정의를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(제7조의2제1항)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▶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, ▶서적 소매업으로 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, ▶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이라는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임.
- 이는 ‘지역서점’의 법적 정의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, 현행 조례가 관계 법령과 동일한 용어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음.

#### 《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》

제7조의2(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(이하 “지역서점”이라 한다)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
### (2) 위원회 운영 횟수 조정(안 제10조제1항)

-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는 지역서점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‘분기별 한 차례 이상’에서 ‘1년에 두 차례 이상’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- 현행 조례에 따라 ‘분기별 한 차례 이상’ 위원회를 개최한다면, 연간 네 차례 이상의 개최 실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 실제로는 2021년을 제외하고 네 차례 개최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.

### 《 위원회 개최 현황 (2016~2022) 》

(단위: 건)

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개최 수	1	3	3	3	2	4	3
개최 방법	대면	대면	대면	대면	서면	서면3, 화상1	서면1, 대면2

※ 2016. 9. 23.(3분기) 지역서점위원회 첫 개최 이후 같은 해 4분기 회의는 미개최

- 문화본부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서점 위원회가 가장 많은 개최 횟수를 요구하고 있으며, ‘분기별’이라는 구체적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어 회의 운영상 재량의 여지가 매우 적은 편임.

### 《 문화본부 소관 위원회 비교 》

(2022. 10. 기준)

	위원회명	조례명	개최 횟수
1	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	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	재량 등
2	전통사찰보존위원회	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	재량 등
3	미래유산보존위원회	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	재량 등
4	노들성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	서울특별시 노들성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	재량 등
5	축제위원회	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연 2회
6	문화예술교육지원 협의회	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	연 2회
7	국악진흥위원회	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	반기별 1회(연 2회)
8	역사도시 서울위원회	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	재량 등
9	문화재위원회	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	재량 등
10	무형문화재위원회	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	재량 등
11	한양도성 자문위원회	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	재량 등
12	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	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	재량 등
13	지역서점위원회	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	분기별 1회(연 4회)
14	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	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	연 1회
15	시사편찬위원회	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	재량 등
16	한성백제박물관 운영(자문)위원회	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	재량 등

※ 재량 등: 시장이나 위원장,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 요구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른 비정기적 개최

- 또한,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관행적으로 설치되어온 서울시내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·분석하여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필요하다 판단되는 위원회를 통·폐합 하는 등 정비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과 같이 ‘1년에 두 차례 이상’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25일
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규남,  
김성준, 김용일, 김원태,  
김형재, 남창진, 박영한,  
박철성, 소영철, 송재혁,  
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,  
, 윤종복, 이영실, 이종태,  
이효원, 임규호, 임종국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위원회 운영 횟수를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규정함(안 제10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##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.

1.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
제10조제1항 중 “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”을 “1년에 두 차례 이상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지역서점"이란 일정 기간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지역서점"이란 「출판 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</li> <li>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</li> <li>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</li> </ol>
<p>제10조(회의 ·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 · 운영) ① -----1년에 두 차례 이상 ----- ----- ----- -----.</p>